

## 진정서

진정인: 김명호

서울시 xxx

피진정인: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 서기석 부장판사

(사건번호: 2005구합33142, 원고 김명호, 피고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판장님

진정인이 이렇게 진정 올리게 된 것은,

1. 3월 2일 결심에서의,

”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들로부터도 판단(판결)하느냐?”라는 진정인의 질문에 대하여

“하지 않는다. 피고는 본안심사를 다루지 않고 있으며, 본안전 판단에 대한 주장만 했다.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재판장님의 답변과

2. 대법원 인터넷 <나의검색>에 의하면,

피고 교육부 답변서에 대하여, 진정인이 (2006년 1월 2일) 제출한 반박 준비서면에 대한 기록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2월 1일자 준비서면 사본을 다시 보내드립니다.

논리적인 선고 기다리겠습니다.

2006. 3. 3.

위 진정인 김명호 (인)

<http://www.geocities.com/henrythegreatgod/2ministry.htm>

참조자료: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2006년 1월 2일자)

서울행정법원(제1 행정부) 귀중